#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04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박홍배

문대림 • 임호선 • 이원택

문금주 • 주철현 • 송옥주

이병진 · 임미애 · 서삼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 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 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 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및 이행하도록 함(안 제9조신설).
- 마.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본의 5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의3 신설).
- 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 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5 신설).
- 사.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 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다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농수산물에 관한 사항
- 5.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수 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 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5(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②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와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이하 "수급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이 법에서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수산물의 수급관리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수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

- 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농업정책관
- 2.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2.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 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수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성을 가진 사람
-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밖에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생산자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로, "하한가격"을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량 및"을 "생산량,"으로, "등을"을 "및 농가경영상황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한 후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3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며, 제9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제9조의2(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을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채소류 등의"를 "농산 물의"로 한다.

제9조(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농산물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 2.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매 또는 판매 계획
- 3.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 획
- 4.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

성 ·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제9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다음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 3.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2)제4항 중 "제9조제3항의"를 "제9조의2제3항의"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

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해당 연도 총생산량(비축 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을 포함한다)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1.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 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 2.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

제10조제2항 중 "협의를"을 "협의한 후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중 "제9조에"를 "제9조의2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 제9조의2"를 "제9조의2"로, "제13조"를 "제9조의4,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2의3. 제9조의5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제59조제1호 중 "제9조"를 "제9조의2"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의2를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lt;신 설&gt;</u>	제5조(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이하 "농수산물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재고량관리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다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농수산물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
	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

<u>제5조(</u>농림업관측) (생 략)

<u>제5조의2(</u>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 계작성 등) (생 략)

<u>제5조의3(</u>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생 략)

<신 설>

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 산물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 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u>제5조의2(</u>농림업관측) (현행 제5 조와 같음)

제5조의3(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 계작성 등)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u>제5조의4</u>(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현행 제5조의3과 같 음)

제5조의5(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

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 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각각 둔 다.

- ②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와 수 산물수급관리위원회(이하 "수 급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 절명령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이 법에서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수산물의 수급 관리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수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각 위원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 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농업 정책관
- 2.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 1.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2.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수산 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제6조(계약생산)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그밖에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약생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 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 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 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 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 <신 설>

<신 설>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 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 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u>하한가격</u>[이하 "예시가격"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격 예시) ①
\\(\0.\frac{1}{1}\) \(\frac{1}{1}\)
<u>생산자와 소비자를</u>
<u>하한가격과 상한가</u>
-,
②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u>생산</u>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u>협의하</u> 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 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 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u>제5조에</u> 따른 농림업관측·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 측의 지속적 실시

$\circ$	( 샜	랴
4.	(7)	47

<u>생</u>
<u>산량,및 농가경</u>
<u>영상황 등을</u>
③
협의한
후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u>4</u>
<u>.</u>
1. <u>제5조의2에</u>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u>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신 설>

4.·5. (생략) <u><신 설></u>

3. <u>제9</u>	<u> 조의2</u>	 

3의2. 제9조의3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 • 5. (현행과 같음)

- 제9조(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수있다.
  - 1. 농산물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 2.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매 또는 판매 계획
  - 3.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 4.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

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 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고, 이 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 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 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 · 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 ·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 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보호) ①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 정대책을 수립 · 시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채소</u> 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농산
물의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
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제9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확
정·고시된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

매업자 · 소매업자 등이 보유

<u>제9조의2(</u>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 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 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3.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u>항에 따른</u>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4(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3항의-----제9조의5(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 · 고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 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 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수급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 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 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 된 대상 품목별 해당 연도 총 생산량(비축 농산물 및 수입농 산물을 포함한다)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격안정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 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 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u>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u>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 다.
- 1.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 2.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 ① (현행과 같음)

비율

(2)

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 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u>협의를</u> 거쳐 일정 기 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 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 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 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 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설>

협의한 후 수급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

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 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 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 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 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 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 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	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축산식품부장관은 <u>제9조에</u> 따	<u>제9조의2에</u>
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	
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	
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	
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	
・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	
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b></b>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의2제3항</u> , 제16조제2항	3. <u>제9조의4제3항</u>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2
을 위하여 지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u>제9조, 제9조의2, 제13조</u>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생 략) <신 설>

- 3. ~ 5.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 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 1. <u>제9조</u>, 제13조 및 「종자산 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2. <u>제9조의2, 제9조의4, 제13조</u>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제9조의5에 따른 농산물</u>
가격안정제도의 운영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1. <u>제9조의2</u>
2.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u>1.</u> ~ <u>3.</u>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1.</u> ~ <u>6.</u> (생 략)

④ (생 략)

<u>2.</u>	$\sim$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	호까	·ス] S	가 같음	)	

3	 	 	 	

-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2. ~ <u>7.</u>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